

# 2008년 주요 농정시책

농림부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2007년 12월에 2008년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2008년 주요 농정시책 중 축산분야에 편성된 주요 시책을 요약·발췌하였다.

## 1.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 '08년 12월부터 시행

### 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물위생과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08년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
- 법이 시행되면,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
-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신고한 자에게 통보, 이를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해당 소에 부착해야 함
-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에 농림부장관이 부여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함
- 동 법에서 정한 출생 등의 신고, 표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소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됨
-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구입한 쇠고기의 이력을 알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8년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자금을 지원
- '08년도 사업비 : 1천 286억 6천만원(보조 25,732, 융자 77,196, 자부담 25,732)
- 지원조건 :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08년도 사업량 : 총 515개소(한우 200, 양돈 150, 양계 75, 오리 10, 낙농 80)
- 개소당 지원한도액 : 한(육)우 200백만원, 양돈 900, 산란계 1,400, 육계 700, 오리 700, 낙농 20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17년까지 5,150개소를 지원하게 되며,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3.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

### 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해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 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한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 낙농체험관광사업을 추진 계획.
- 낙농체험관광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에는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 개선비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등에 대해 무이자 융자로 지원

※ '08년도 사업지원 개소수 및 금액 : 4개소, 4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지원조건 : 용자 100%(무이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기존 농촌체험과는 차별화된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 소비자의 체험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가축방역 또는 낙농환경 미비로 인해 패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낙농목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험현장으로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축산 및 낙농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

이코플라즈마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5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내 제2종 가축전염병(18종)중 13종을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할 계획

※대상 가축전염병 : 소 전염성비기관염, 소 류코시스, 소 렙토스피라, 돼지 전염성위장염, 돼지 단독,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 유행성설사, 돼지 위축성비염, 닭 뇌척수염, 닭 전염성후두기관염, 닭 전염성기관지염, 마력병, 닭 전염성 F낭병

■인체 질병과 유사한 병명으로 인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질병 명칭 및 인체 질병 명과 서로 달라 통일이 필요한 가축전염병 명칭을 변경

●인체 질병과 유사한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각각 변경했으며, 인체 질병과 질병명이 서로 다른 소 브루셀라병을 “소 브루셀라병”으로 질병 명칭을 통일

#### 4.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 변경

#####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과 제2종에서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중 피해가 적어 정부 방역 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을 제3종으로 변경해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가축전염병 :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닭 마

##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이렇게 수립하였습니다.

### 대책수립경과

'07년 6월 28일 : 협상타결 이후 3개월간(4~6월)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대책 발표

'07년 11월 6일 : 6. 28대책 외에 농업인 단체 등 추가요구를 반영·보완발표

- 10월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 11월 6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

### 보완대책 주요골자

품목별 취약부분을 보완 경쟁력 향상

{축산} 시설 현대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원예}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산지 생산·유통 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품질경쟁력 제고

본격적인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 농가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10)

-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 고령농 경영이양 지원

- 식품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농업인 개발사업 참여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도축세 폐지,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시 양도소득세감면,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한 확대(20→50ha)등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단기적 피해보전제도 지속 운용

### 재정 지원 계획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0년간('08~'17)총 20.4조원 투융자

119조원 투융자 계획('04~'13)은 한미FTA 대책을 반영,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3.9조원을 증액

# FTA농업협상 이렇게 수립하였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임
- 자유무역협정(NAFTA, EFTA 등),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공동시장(EEC, CACM, CCM 등), 완전경제통합(EU 등) 등 4가지유형이 있음
- WTO 규범에서 일정조건 충족시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음
- '07. 7월 현재 세계적으로 380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이 중 205개 발효 중)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2007년 12월)

※협상국(4개국)

	협상개시	추진동향
캐나다	'05년 7월	14차례 협상, 한·미 FTA 수준 요구로 난항
인도	'06년 3월	9차례 협상, 보수적 양허초안 제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으로 추진중
EU	'07년 5월	5차례 협상, 돼지고기·낙농품 관세철폐 등 이견
멕시코	'07년 12월	1차례 협상, 상품 및 SPS협상 잠정안에 대한 검토 등 ( '06. 2월부터 3차례 협상후 중단되었다가 재개)

※발효(4개국)

	발효시기	타결요지
칠레	'04년 4월	양허제외 412개 품목, 10년철폐 197개 품목
싱가포르	'06년 3월	양허제외 484개 품목, 10년철폐 377개 품목
EFTA	'06년 9월	양허제외 956개 품목, 일부감축 또는 10년 감축 288개 품목(EU 미가입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아세안	'07년 6월 (상품분야)	초민감 품목제외 297개, 10년후 5%이하로 감축 151개 품목(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타결(1개국): 미국('07년 4월), 국내 비준절차 준비 중

## 우리의 농업분야 협상 기본원칙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세이프 가드, 수입쿼타 등)과 국내보완대책 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에 추진

# WTO / DDA 협상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GATT에서 WTO까지

GATT : '47년 제네바에서 발족, 우리나라는 '67년 4월 정식 가입

WTO : GATT 주도하에 관세인하 협상, 딜론·케네디·도쿄라운드 이후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종료된 후 '95년 탄생('07년 7월 현재 151개국의 회원국)

## DDA 협상 경과

※'06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출발

※'07년 7월 농업협상그룹 의장(팔코너)의 「세부원칙초안」배포, 다자협의를 거쳐 '08년 1월말 수정된 세부원칙이 제시될 전망  
- WTO사무총장(라미)은 '07년 11월말 회의에서 DDA협상타결 시점을 '08년말로 제시

## 『세부원칙초안』의 주요 내용

관세감축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국내보조
· 관세 75% 초과품목은 감축율 66~73% 적용 등 관세 구간별 감축 · 개도국은 선진국 대비 2/3수준의 감축을 적용	· 감축후 관세가 100%이상인 품목비중이 5% 이상인 경우 저율관세물량 (TRQ) 증량	· 품목수는 선진국의 경우 4~6% (현재 1,452개 품목 중), 개도국은 1/3추가 인정 · 관세감축율은 일반품목 대비 1/3~2/3수준 차등(저율관세물량 제공)	· 개도국에게만 인정 · 민감품목보다 품목 숫자와 관세 감축에 우대 적용	· 무역왜곡 보조 총액 50~60% 감축 · 감축대상 보조는 45% 감축

## 전망과 대응

※그동안의 협상진전으로 선진·개도국, 수출·수입간 입장차이가 많이 좁혀졌음

※유사입장 국가와 공조하여 협상에 우리 입장 반영

※세부원칙 타결에 따른 이행계획서 작성시에는 개도국 지위 확보 등으로 농업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